

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가 2006. 10. 13 : 사천시장 제출

나 2006. 10. 13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57호)

다 2006. 10. 24 :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상정,
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사회복지과장 임귀자)

가 제안이유

- 수급권자의 자활·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해 주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액을 높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 주요내용

1) 제명을 변경함(안 제명)

-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
⇒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

2) 융자금 한도액 상향 조정(안 제5조제1항)

- 현행 500만원 → 1000만원

3) 융자대상을 변경함(안 제4조제1항제호)

- 중·고등학교의 학자금 → 대학교(전문대학 포함)의 학자금

4)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및 책임 명문화(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 3)

다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
- 지방재정법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군호)

-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
- 조례 제명의 변경, 용자 한도액 상향조정, 용자대상 변경, 특별회계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 제도 신설 등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이 활성화되어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